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나480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5. 3.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0가단94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이의 2018. 1. 3.자 차용계약서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02,5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의 취지는, D와 피고가 통모하여, D는 피고에 대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D에 대한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차전58319)을 받아낸 다음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 삼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타채100282)을 받고, 결국 울산지방법원 J 배당절차사건에서 D에 배당된 배당금 일부를 피고가 전부권자 자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였다는 것이나, 제출된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보아도 통모에 의한 허위채권채무 작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도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은 D가 피고에게 임의 변제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만 따져 보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우종, 판사 위은숙, 판사 신승아